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심사 강화(안 제22조)

제5호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명확화하고, 공무원임용령상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을 적용하도록 공적심사 절차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소속”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속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⑩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소속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제8항,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40조의4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승진임용)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소속 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5.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속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설>	⑧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⑨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속장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및

<신 설>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
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
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하거나 제1항제5호에 해
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
우, 소속장관은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통합인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97